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12 선고 2022가단537177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신원

담당변호사 최서광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용민

변 론 종 결 2024. 1. 26.

판 결 선 고 2024. 4. 12.

주 문

1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1. 22. 체결된 매매계약을 138,727,3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38,727,384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2019. 1. 1. 주식회사 C(이하 'C'이라고 한다)과 C로부터 벌크선 수입 화물의 물류업무 및 부대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, 그에 따라 C로부터 위탁받은 물류업무를 수행하였다.

나. 원고는 C로부터 위 위탁계약에 따른 2019. 9.분부터 2019. 12.분까지의 위탁수수료 합계 138,727,384원(= 2019. 9.분 77,872,376원 + 2019. 10.분 12,504,915원 + 2019. 11.분 21,589,642원 + 2019. 12.분 26,760,451원)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297933호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. 위 법원은 2022. 9. 5. 'C은 원고에게 138,727,3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22. 9. 29. 확정되었다. 다. C은 피고에게, 2019. 11. 22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상 건물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1,306,200,000원에 매도하였고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, 2019. 12. 12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라. 한편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924,000,000원,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2016. 5. 4. 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60,000,000원,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2016. 10. 11. 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,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. 12. 12.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, 같은 날 채권최고액 1,080,000,000원, 채무자 피고,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0호증, 을 제6, 7,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2019. 9.경부터 그 무렵까지 발생한 위탁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, 이후부터 2019. 12.경 발생한 위탁수수료 채권은 위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해당 물류업무에 대한 지시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위탁수수료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,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이상, 원고의 C에 대한 위탁수수료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’라고 함은 재산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(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).

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C은 2019. 12. 31. 기준 부채총계 12,773,998,888원, 자산총계 3,257,761,648원, 자본총계 -9,516,237,240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9. 11. 22.에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그러한 상태에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,306,200,000원에 매도함으로써 C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C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1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재무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인근 지역의

부동산 시세에 맞추어서 대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,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.

2)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(출처: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5,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경영 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가) 피고는 철강 가공 및 철강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,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식회사 H(이하 'H'라 한다)로부터 합계 80,679,455,491원, C2)로부터 합계 18,202,551,296원어치의 철강을 공급받았다. 이에 관하여 피고는, C은 H의 대표이사인 I 및 그의 아들인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, H로부터 일부 주문 물량에 대하여 C에 주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C에 주문을 한 것일 뿐 C의 기업 상태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가 C에 주문한 철강의 물량이 상당하고 그 공급 기간도 짧지 않았던 점, H와 C 사이의 관계, 또한 피고가 H와 C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.

나)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중개인을 통한 통상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졌다.

피고는,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H가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에게 철강 공급에 관하여 선급금 지급을 요구하였고,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한다.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H가 아닌 C 소유이다. 피고는 그 이전에도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요청한 바 있었으나 J의 거절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바 있고,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C의 대표자였던 사내이사 K가 아닌 J과 매매대금이나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,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지배구조, 자산내역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, 피고로서는 J이 그 의사를 반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에 비추어 C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을 것임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.

다)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, 주식회사 D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각각 9억 2,400만 원, 6,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‘등기부에 명시되지 않은 부채는 책임지지 않는다’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,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있었을 것임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.

라.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

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,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(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214319 판결 등 참조).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(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),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(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최고액 924,000,000원,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2016. 5. 4. 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60,000,000원,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2016. 10. 11. 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. 12. 22.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.

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1,306,200,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,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시가도 그와 유사한 정도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위 1,306,200,000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984,000,000원을 공제한 322,200,000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,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138,727,384원을 초과하므로, 결국 원고는 138,727,384원의 한도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.

마. 소결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38,727,384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임상은

별지

1) 원고는 2023. 7. 6.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의 가항에 안성시 E 공장용지의 면적을 2,633㎡로 기재하였고, 같은 목록 제1의 나 내지 바항 기재 토지 중 지분

기재를 모두 누락하였으며, 바항 기재 토지 지번을F으로 기재하였고, 2의 나항 기재 건물의 대지 지번을 G으로 기재하였으나, 이는 모두 오기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별지 각 항과 같이 정정한다.

2) 2016. 5. 19.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까지 C의 대표자 사내이사는 K였다가 2019. 12. 9. K가 사임하고 I가 취임하였다.